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10. 26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2. 8. 20

나. 제안자 : 이재병·전용철(이재병 의원 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12. 8. 21

라. 상정일자 : 2012. 10. 26 (제20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재병 의원
- 검토보고 :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I. 제안이유

- 가.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
- 나.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II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(안 제3조)
- 나.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- 다.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라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III. 입법예고기간중 제출 의견

- 기 간 : 2012. 8. 30 ~ 9. 19(20일간)
- 방 법 : 시의회 홈페이지, 공문 (관계부서)
- 입법예고 결과 :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의견 제출(2012.7.12)

□ 조례(안) 제7조(실태조사 등) 삭제

- 조례(안) 7조에 의하면 시장이 기업, 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조례(안)의 상위법 『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8조에 의하면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된바 시의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의 조사와 중복, 조사에 따른 인력, 예산 등 낭비가 우려되므로 삭제 필요

□ 조례(안) 제12조(가족친화 기업지원) 관련 부서 의견수렴 필요

- 조례(안) 12조에 의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『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등에 우대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부서(중소기업지원과)의 수용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 경위 및 배경

- 『**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**』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재병의원이 2012년 8월 20일 대표 발의하여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동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,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제반 기반시설 마련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총 11개 조문이 중첩되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(제5조2항: 시행계획의 수립, 제8조1~5항: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촉진, 제12조: 가족친화기업 지원, 제13조: 표창)을 일부 보완하거나 신설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※ 조례안과 법(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) 비교표

구 분	조 례 안	법	비 고
제1조 (목적)	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	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 (법 제1조)	
제2조 (정의)	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	“ 좌 동 ” (법 제2조 제1항~제4항)	
제3조 (시장의 책무)	①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 ②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	“ 좌 동 ” (법 제3조 제1항) “ 좌 동 ” (법 제3조 제2항)	

구 분	조 례 안	법	비 고
제4조 (사업주의 책무)	①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노력 ②근로자의 참여 촉진 노력	“ 좌 동 ” (법 제4조 제1항) “ 좌 동 ” (법 제4조 제2항)	
제5조 (시행계획 의 수립 등)	①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·시행 ②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 포함 1.시장과 군수·구청장의 협력사항 2.민간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3.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“ 좌 동 ” (법 제6조 제1항) (신 규) (신 규) (신 규) (신 규)	
제6조 (계획수립 의 협조)	①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	“ 좌 동 ” (법 제7조 제1항) “ 좌 동 ” (법 제7조 제2항)	
제7조 (실태조사 등)	①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②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	“ 좌 동 ” (법 제8조 제1항) “ 좌 동 ” (법 제8조 제3항)	
제8조 (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촉진)	1.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을 위한 지원사항 1항 ~5항	“ 좌 동 ” (법 제12조) (신 규)	
제9조 (가족친화 마을환경 의 조성 촉진)	1.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을 위한 지원사항	“ 좌 동 ” (법 제13조)	
제10조 (가족친화 지원센터 의 지정 등)	① 시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②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1.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... ③시장이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	“ 좌 동 ” (법 제19조)	
제11조 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	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음 ② 평가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	“ 좌 동 ” (법 제10조 제1항) “ 좌 동 ” (법 제10조 제2항)	
제12조 (가족친화 기업지원)	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에 대하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시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우대 가능	(신 규)	
제13조 (표창)	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 지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	(신 규)	

나 . 주요내용

1) 안 제2조(정의)

-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- 가족친화 사회환경 , 가족친화 직장환경, 가족친화 마을환경¹⁾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제도에는 탄력적 근무제도,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, 부양가족 지원제도, 근로자 지원제도, 그 밖의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²⁾로서 가족관계증진제도,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, 가족친화 사회공헌 제도가 있음.

2) 안 제3조(시장의책무), 안 제6조(계획수립의협조), 안 제8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

-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직장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가족친화 사회환경"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,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.
2. "가족친화 직장환경"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.
3. "가족친화제도"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.
 - 가. 탄력적 근무제도 :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
 - 나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: 배우자 출산휴가제, 육아휴직제, 직장보육 지원,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
 - 다. 부양가족 지원제도 : 부모 돌봄 서비스, 가족간호휴직제 등
 - 라. 근로자 지원제도 : 근로자 건강·교육·상담프로그램 등
 - 마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
4. "가족친화 마을환경"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.

2) 제2조(가족친화제도)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마목에서 "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"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19>

1. 가족관계 증진제도 : 자녀 방학 중 휴가제, 근로자가족 초청행사, 정시퇴근제, 육아데이,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
2.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: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
3.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: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(祖孫家族), 다문화가족, 독거노인,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

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내용을 규정하였음.

- 참고로 우리시의 2012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현황으로는 한국지엠과 인천항만공사가 있음.

구분	인증번호	기업명	업종	비고
대기업	2012-15	한국지엠	자동차제조	
공공기관	2012-66	인천 항만공사	부동산 및 서비스	

3) 안 제7조(실태조사 등)

-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.
-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실태조사는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2조(권한의 위임사항)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사항에도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. 입법예고 시 제출된 관계부서의 의견을 보면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의 조사와 중복되고 조사에 따른 인력, 예산 등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임.

4) 안 제10조(가족친화센터의 지정)

- 시장은 가정친화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현재 인천시의 가정친화 관련 사업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, 전국적 현황을 볼 때 한국건강가정진흥원³⁾ 1개소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정친화센터로 지정받아 전액국비로(연 330,000천원) 각종 가족친화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.
- 시장이 센터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센터를 지정받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타 시·도의 조례를 보면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서울, 대구, 경기에서는 센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음.(※붙임자료)

5) 안 제12조(가족친화 기업 지원)

- 시장은 법 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,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 우대할 수 있음.
- 조례안 제3조(시장의 책무)를 고려할 때,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를 해 주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소관하는 경제수도추진본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3)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(합정동 월빙센터)8층/ 2011년부터 3년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센터지정/가족친화기업컨설팅,가족친화교육 및 조사,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가족친화포럼 등 사업시행

『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부서의 조례 검토의견』

○ 중소기업 육성기금(시설개체자금) 검토의견 (산업기반과)

-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,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
- 기금의 지원 대상은 동 조례 제12조 ①에 “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”고 명시되어 있음.
- 따라서 「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12조의 지원사항은 융자대상 선정 시 두 조례가 상충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. 다만, 가족친화 기업중 동 기금 고유목적에 부합되는 “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”은 지원이 가능할 것임.

※ 다만 가족친화 기업이 인천에 공장과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전업율이 30%를 넘는 제조공장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의 규모와 종류는 매년 초에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되므로 사전 협의 필요함

○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검토의견 (중소기업과)

-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협약 자금을 융자하며, 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
- 가족친화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, 지원대상 업종(제조업 등)에 해당되면 자금 한도내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함
- 다만,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서 관련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.

『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현황』

조 례 명	소관부서	용 도	비 고
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운용조례	중소기업과	-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 차액의 보전 등 -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	2012년 2차보전 금 예산 295억
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	산업기반과	-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등 -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 및 지원	기금액 1937억

6) 안 제13조(표창)

-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인천광역시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〈 질 의 〉

- 박승희, 신현환, 제갈원영, 박순남, 신동수, 강병수 위원
 - 안 제10조는 검토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시장이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지정받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시집행부의 의견은?
 - 안 제7조에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더라도 우리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, 또한 우리시가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부의 의견은?
 - 조례의 내용이 대체로 관련법과 중첩되어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,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?

〈 답 변 〉

○ 이재병 의원, 박덕순 여성가족국장

- 안 제10조의 센터의 지정은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으로 지정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임.
-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법령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중복성의 우려 있음. 가능한 한 데이터 공유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
- 조례는 상위법률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우리시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.

나. 반 대 : 박승희, 신현환, 제갈원영, 박순남, 신동수, 강병수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6명)

안 제7조 중 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한다. 안 제12조 본문 중 “또는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”을 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중 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한다.

안 제12조 본문 중 “또는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”을 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기업·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기업·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제10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.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.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 정보의 수집·제공 등 5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홍보,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10조(삭제)

제정안	수정안
<u>제11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</u>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<u>제10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</u>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<u>제12조(가족친화 기업 지원)</u>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 시 또는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.	<u>제11조(가족친화 기업 지원)</u>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 시 <u>중소기업</u>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.
<u>제13조(표창)</u>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 1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·단체	<u>제12조(표창)</u>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 1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·단체
<u>제14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13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·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장과 군수·구청장의 협력 사항
2. 민간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
3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기업·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
2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3. 직장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
4.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
6.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.

제9조(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·보급
2.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
3.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·지원
4.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 평가
5.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

②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
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1조(가족친화 기업 지원)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
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·단체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